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3. 8. 1.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내역

제정	1984 .	10 .	15	대구직할시	상정	1379 - 17621
개정	1985 .	12 .	31	대구직할시	상정	29232 - 23458
개정	1986 .	3 .	31	대구직할시	상정	29239 - 8157
개정	1987 .	5 .	14	대구직할시	상정	29232 - 9970
개정	1987 .	5 .	29	대구직할시	상정	29232 - 11163
개정	1987 .	11 .	13	대구직할시	상정	29230 - 23073
개정	1988 .	4 .	6	대구직할시	상정	29230 - 6703
개정	1988 .	6 .	22	대구직할시	상정	29230 - 12044
개정	1988 .	10 .	27	대구직할시	상정	29232 - 21408
개정	1988 .	11 .	28	대구직할시	상정	29230 - 23772
개정	1990 .	8 .	30	대구직할시	상정	29232 - 20861
개정	1991 .	8 .	10	대구직할시	상정	29232 - 20788
개정	1992 .	2 .	28	대구직할시	상정	29232 - 235
개정	1992 .	12 .	21	대구직할시	상정	29232 - 1524
개정	1993 .	3 .	10	대구직할시	상정	57201 - 293
개정	1994 .	7 .	25	대구직할시	상정	57240 - 863
개정	1995 .	12 .	28	대구광역시	상정	57240 - 1491
개정	2000 .	3 .	25	대구광역시	기계	57240 - 178
개정	2000 .	9 .	14	대구광역시	기계	57253 - 536
개정	2001 .	1 .	9	대구광역시	기계	57253 - 14
개정	2001 .	11 .	29	대구광역시	기계	57253 - 385
개정	2002 .	11 .	28	대구광역시	기계	57253 - 157
개정	2003 .	4 .	9	대구광역시	공업	57253 - 20352
개정	2004 .	7 .	1	대구광역시	공업진흥과	- 4063
개정	2005 .	1 .	1	대구광역시	공업진흥과	- 8207
개정	2005 .	6 .	30	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	- 6966
개정	2006 .	6 .	29	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	- 7342
개정	2006 .	10 .	23	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	- 11994

개정	2007 .	8 .	9	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	8585
개정	2007 .	12 .	27	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	13081
개정	2008 .	1 .	31	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	1284
개정	2008 .	5 .	27	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	5685
개정	2008 .	8 .	4	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	8413
개정	2008 .	8 .	12	대구광역시	기계에너지과	-	218
개정	2008 .	12 .	30	대구광역시	기계자동차과	-	147
개정	2009 .	7 .	1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정책관	-	438
개정	2010 .	7 .	6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정책관	-	5466
개정	2011 .	2 .	23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정책관	-	1634
개정	2011 .	6 .	30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정책관	-	5604
개정	2012 .	6 .	28	대구광역시	녹색에너지과	-	5727
개정	2012 .	9 .	27	대구광역시	녹색에너지과	-	8696
개정	2013 .	7 .	25	대구광역시	녹색에너지과	-	672
개정	2014 .	10 .	1	대구광역시	기계에너지과	-	309
개정	2015 .	9 .	9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1905
개정	2016 .	6 .	30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	-	7903
개정	2017 .	6 .	29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	-	9258
개정	2018 .	6 .	27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	-	10685
개정	2018 .	10 .	30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	-	19075
개정	2019 .	6 .	27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13150
개정	2020 .	6 .	26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13408
개정	2020 .	11 .	27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25460
개정	2021 .	6 .	29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12942
개정	2021 .	11 .	25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23093
개정	2022 .	6 .	10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10488
개정	2023 .	7 .	27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496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의무)	1
제3조(적용)	1
제4조(용어의 정의)	2

[제2장 공급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공급 및 사용변경신청)	4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4
제7조(승낙의 의무)	5
제8조(계약의 준수)	6
제9조(해지)	9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10
제10조의2(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10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11
제12조(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12
제13조(가스계량기)	12
제13조의2(온압보정장치)	13
제14조(공사비)	14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15
제16조(계량의 단위)	16
제17조(사용량의 산정)	16
제17조의2(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17

[제5장 요금]

제18조(요금)	18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18
제20조(요금의 수납)	20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21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21
제23조(이의 신청)	21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22
제25조(보증금)	23

[제6장 공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24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25
제28조(공급중지)	26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27

[제7장 안전]

제30조(가스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28
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28

[제8장 기타]

제32조(문서보관)	29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29

<별 표>

[별표1] 공급권역	39
[별표2]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39
[별표3] 시설분담금	40
[별표4] 가스계량기 관리비용	42
[별표5] 요금표	43

<서 식>

[서식 1]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신규)	47
[서식 2]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변경)	48
[서식 3]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49
[서식 4] 계좌자동이체 신청서	52
[서식 5] 도시가스 공급 중지 예고	53
[서식 6] 도시가스 폐관 신청서	54
[서식 7] 도시가스 폐전(계량기) 신청서	55
[서식 8]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56
[서식 9]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58
[서식 10]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60
[서식 11] 도시가스 공급계약 해지 신청서	68
[서식 12] 도시가스 공급확인원	69
[서식 13] 도시가스 공급계약 확인서	70
[서식 14]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71

<부 록>

[부록 1] 관계 법령 요약	75
[부록 2] 유관기관 연락처	8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성 에너지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 공급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 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 그 밖의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 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무)

-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 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센터)를 설치, 각종 고객상담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 상담 처리 기록을 유지합니다.
-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합니다)이 허가한 별표1의 공급 권역내 가스 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kPa (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Nm³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2.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3.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4. “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 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 산정합니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 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 라 함은 가스 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3. “지역정압기” 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정압기” 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 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 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 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 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일반 시설분담금” ,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이라 함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202호)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합니다.
19. “특수 계량기” 라 함은 계량기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와 다기능 가스 안전계량기를 말합니다.
20. “듀얼연료설비” 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
21. “연료대체” 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공급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공급 및 사용변경신청)

-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2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가스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규단지 조성사업(택지 등)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①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대구광역시 고시(제

2008- 202호)에 의거 산정한 별표3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산정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의 기준은 잠재수요 세대수를 적용합니다.
- ④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전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폐전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가스공급 신청자 중 당해 연도 회사 투자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에 대하여 익년도 투자계획에 반영합니다. 다만, 제7조(승낙의 의무)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⑥ 회사는 제2항의 시설분담금 청구 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제3항에 따라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합니다.

1. 가스 공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공급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의 준수)

-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 사용 전 가스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스요금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제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인해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와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가스 사용시설의 소유주(건물 소유주)에게 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니다. (다만,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원룸세입자, 무보증 임차인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함)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4.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경매·공매 등의 사유로 가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 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 사용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전 가스 사용자의 미납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가스 사용자의 미납요금은 변경된 가스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가스 사용자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계약의 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가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 사용자는 사용계약을 변경하여 가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된 가스 사용자는 이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7.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미납청구서 또는 독촉장 등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 원금(부가가치세 미포함)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미납한 일수(최대 2개월)만큼 계산하여 연간 최대 2회까지 부과합니다. 다만, 청구서가 발행되기 전에 사용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용

계약 해지일까지 계산합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서식14]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사용요금 외 별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 사용자 또는 그 가스시설 시공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또는 온압보정장치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 계량기 교체비용 + 월사용료의 5배
 - 온압보정장치 : 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월사용료의 3배
3. 무단사용
 -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 월사용료의 5배
 - 공급중지 조치건에 대해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사용 (밸브 봉인 장치 파손 등) : 중지 지침 이후 무단 사용분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월사용료의 3배

- 6. 부정시공사용 : 월사용료의 5배
-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 8. 가스사용시설의 원상복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⑤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월 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부당행위로 실제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전년 동월 사용료
- 2.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사용료
-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 제6호의 월 사용예정량에 의한 사용료

제9조(해지)

- ① 가스 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예정일에 해지 하고, 그 일자를 해지일로 합니다. 다만, 시설물을 철거하는 폐전(계량기 포함)의 경우에는 시설물이 철거된 그 일자를 해지일로 합니다.
- ② 가스 사용자가 회사에 사용계약 해지 통지를 아니 하고 전출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지일로 합니다.
- ③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 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사용계약 해지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회의 납기일까지 납부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시에는 가스를 공급합니다.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회사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계약, 시설분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③ 회사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객 동의 등 관련 법규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 ④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은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도시가스 연료 전환 시설에 대하여 열량 변경 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량 변경 작업으로 인한 가스 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가스계량기)

-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 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검침·교체·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장이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③ 가스계량기의 교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회사가 실시합니다. 그 밖의 계량기의 경우 계량기의 정확도 확인 및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교체를 실시하며 회사는 계량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또는 격월 가스요금청구서에 별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④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또는 격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여 폐전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선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합니다. 회사는 사용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 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체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 ⑥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 계량기를 설치시 회사는 수요자와 별도 협의를 합니다. 가스 사용자가 특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스계량기 관리비용은 별표4에 따라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의2(온압보정장치)

- 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스 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 사용자가 회사에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회사는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또는 격월 가스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14조(공사비)

-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 ②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가목3)다)에 따라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와 별표6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⑥ 가스 사용자에게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함

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기존 공급시설의 폐관이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과 폐관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 ⑦ 수요자의 사유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 수요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⑧ 공급관 공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및 아파트에서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스 공급시설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요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전 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부담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사·난방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할 경우에 한합니다.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 ① 가스계량기 검침과 요금청구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해지되었을 때
 - 2. 가스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 5. 사용량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6. 가스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검침이 필요한 경우

제16조(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Nm³)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17조(사용량의 산정)

- ① 회사는 가스 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2항 또는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용량(Nm³)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열량과 기간별 공급량에 따라 가중평균열량을 곱하여 사용량(MJ)을 산정합니다.
- ② 공급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최고압력 이하로 공급되는 가스 사용자의 가스계량기 검침량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스 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다만, 공급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V = \frac{V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V = 산정사용량(m³)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 ③ 회사는 가스 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가스계량기의 고장 또는 기온의 변화로 전체 사용량 변동이 많을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월 이전에 적용할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등급 계량기의 용도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④ 회사의 사유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 미검침 사유 및 인정부과 내용 등을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문자, SNS 등) 후 인정부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인정부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연속으로 인정부과 하지 않습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사용량의 산정시 정산합니다.
- ⑥ 회사는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용 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를 적용합니다.
- ⑦ 특수계량기에 의한 원격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원격 지침과 가스계량기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제17조의2(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 ① 제13조의2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 ② 제13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 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사용량의 산정)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제 5 장 요 금

제18조(요금)

- ① 가스요금은 가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별표5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98. 8. 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으로 연동하여 시행합니다.
-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청구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 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가스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요금 변동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변동 전후의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 ⑦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개별난방·중앙난방·자가열전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및 수송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용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9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기에 적용합니다.
5.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동일 장소 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 사택은 제외합니다.
6.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7. 연료전지용 요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연료전지 중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8.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 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자가용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9.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 및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0조(요금의 수납)

- ① 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MJ)에 따라 별표 5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요금청구서(전자요금청구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 ② 가스 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미납청구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요금청구서에 미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③ 회사는 1인의 가스 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1. 사용일수 15일 이상: 1개월 기본요금(매월/격월 검침)
 2. 사용일수 45일 이상: 격월 기본요금(격월 검침)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사용계약 해지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⑦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청구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청구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청구분을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대용량 가스 사용자 및 연2회 이상 미납한 사례가 있는 가스 사용자는 월2회 이상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공급중지 및 사용계약해지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가스 사용자가 부도, 경매 또는 파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시·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스 사용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 기한 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및 계량기 기준 G2.5(4등급) 이하 사용 요금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23조(이의 신청)

- ①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의 오류로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 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익월 요금납기일까지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납기일이 정해질 경우 납기일까지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 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지체보상금을 가산하여 환불하며, 보상율을 연5%를 적용합니다.
- ⑤ 회사의 사유로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되어 환불 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이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합니다.
- ⑥ 가스사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배관 손상 등으로 누출된 가스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요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누출여부를 확인하여 가스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해당 월 요금은 제 17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을 산정하여 부과 합니다.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오차분의 요금을 계량기 설치일 기준으로 정정하여 정산합니다.

제25조(보증금)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물건(근저당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사용예정량이 1,000m³ 이상인 가스 사용자
 2.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 사용자 (다만, 주택용 가스 사용자 제외)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 사용자
 4. 가스공급 후 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 사용자
 5. (가)압류, 고객신용상태 변동, 회생절차개시,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 사용자
-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 사용량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가목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월 사용예정량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1호 내지 4호의 경우 2년 이내로, 5호의 경우 보증금 예치원인이 해소되는 날까지로 하되, 동 기간 중 1회 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 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이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

하지 않을 때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관리비용 포함)을 가스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정산하며, 정산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 ⑤ 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시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1.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 2.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 6 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열량 : 최고열량 44.4MJ/Nm³ (10,600kcal/Nm³)
최저열량 41.0MJ/Nm³ (9,800kcal/Nm³)

다만, 상기 열량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 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 이어야 합니다.

단, 한국가스공사에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LPG 혼입을

확대하는 경우 $\pm 2\%$ 가스열량 변동 폭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 : 최고압력 2,451.7Pa(250mmAq)

최저압력 980.7Pa(100mmAq)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공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 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공급중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3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문자메시지,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보증금, 계량기 관리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미납청구서 또는 독촉장 등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제8조(계약의 준수)를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2회 이상의 사용계약 요청을 받고도 거부할 때
 4. 가스 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

- 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 5. 가스 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 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 7.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가스 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공급중지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 안전점검 미 실시 등 가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급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급중지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거나 가스사용시설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공급중지 시 관할 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전한 후 가스 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제 7 장 안 전

제30조(가스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 ① 가스 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 사용자 등은 가스 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가스 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 가스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⑤ 공동주택의 정기검사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8 장 기 타

제32조(문서보관)

- ① 회사는 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합니다.
-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서비스센터의 직원을 가스 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 칙

1. (승인일) 이 규정은 1984년 10월 15일 승인 받은 것이다.
2. (시행일)
 - 가. 이 규정 시행은 승인 후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 나. 변경 승인된 공급규정은 승인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관계 법규에 의한 명령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 공과금 과징 지침이 준용되는 사항은 통합 공과금 과징 지침이 적용되는 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승인일) 이 규정은 1992년 2월 28일 승인 받은 것이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2월 21일 변경 승인 및 시행 (요금은 '92. 12월 검침부터)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용구 손료 경과조치) 이 규정 변경 승인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용구 손료는 향후 가스계량기 교체 시 수요가

별로 이를 정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스의 요금 및 제30조에 의한 열량, 주요 성분 등 천연가스 와 관련된 사항은 1995년 12월 7일부터, 제9조 및 제40조에 의한 체납 가산금은 1995년 8월 체납 분부터 소급 적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스요금은 2007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설분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별표3(시설분담금)은 가스공급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수요자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열량은 2012년 7월1일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최고열량 : 44.4MJ/Nm³ (10,600 kcal/Nm³)
최저열량 : 42.28MJ/Nm³ (10,100kcal/Nm³)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사시행 적용례) 제11조(공사시행)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 [별표 1] 공급권역
- [별표 2]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 [별표 3] 시설분담금
- [별표 4] 가스계량기 관리비용
- [별표 5] 요금표

[별표 1] 공급권역

- 대구광역시 전역(군위군 제외)
- 경상북도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동명면

[별표 2]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등 급	2	2.5	3	4	5	6	7	10	16	25	40
표준소비량 (m ³ /h)	2	2.5	3	4	5	6	7	10	16	25	40

- 표준가스소비량 및 계량기 등급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산정합니다.
 1. 기준 열량
표준가스소비량(m³/h)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8MJ/Nm³ (10,145kcal/Nm³)로 합니다.
 2. 소비량 산정
 - 가. 주택용 수요가
 - 취사전용 수요가 : 2.5m³/h
 - 취사, 난방 겸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나. 주택용 외 수요가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3. 계량기 등급의 산정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 40m³ 이하인 경우에는 계량기 등급을 적용하고, 40m³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 등급을 산정합니다.(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상합니다.)

[별표 3] 시설분담금

- 시설분담금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하여 표준가스소비량(m³/h) 기준으로 차등 부담합니다.
- 1. 일반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 나. 기준단가 : 22,730원(단위당 표준가스소비량 기준)
 - 다. 금 액 : 기준단가 × 표준가스소비량
-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주택용)
 - 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 수요자 또는 사용자
 - 나. 기준단가 : 103,251원(단위당 표준가스소비량 기준)
 - 다. 금 액 : 기준단가 × 표준가스소비량
-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100m당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35세대 미만인 가스 수요자
 - 나. 기준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시설분담금 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신규 진입 가스 수요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
 - 다. 금 액 : 기준단가 × 표준가스소비량
 - 라. 적용기준
 - 표준투자비는 m당 308,653원을 적용합니다.
 -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지역에 가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 연장길이를 적용합니다.
 - 적용률은 36%를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가스 수요자의 일반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적용합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연평균 사용량 × 요금상 감가상각비(13.67원/m³) × 내용연수 × 세대수를 적용합니다.
(연평균 사용량 : 용도별 총가스사용자의 평균값)
 - 신규 진입 가스 수요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공급계약시 표준가스소비량의 합으로 합니다.

- 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공급관에서 추가로 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수요자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추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최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240 - 최초 수요가 사용월수) ÷ 240
 -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 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가스 사용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표준가스소비량(m³/h)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표준가스소비량(m³/h)의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다만, 주택용 가스를 사용 중인 개별난방 세대는 제외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202호)에 따릅니다.

[참 조]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세 대 수	10세대	15세대	20세대
금 액	788,934	418,551	233,359
세 대 수	25세대	30세대	34세대
금 액	122,244	48,167	4,593

※ 100m 당 세대수에 따라 1세대가 납부할 금액이며, 세대별 금액은 용도 및 공급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4] 가스계량기 관리비용

(단위 : 원/1개월, 부가세별도)

기종	등급	OIML	G1.6	G2.5	G4	G6	G10	G16	G25	G25(40) 초과		
	KS	2	2.5(3)	4	5	6(7)	10	16	25		40	
일반계량기		140	310	320	340	340	950	4,050	4,200	6,060	별도계상	
특 수 계 량 기	디지털계량기		580	580		610						
	아날로그 계량기	원격		470	480		530	1,080				
		디지털 변환		710	720		770	1,310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	비원격		950	950		1,000					
		원격		1,060	1,060		1,110					
	누출 검검용 계량기	비원격		470	470		500					
		원격		580	580		610					
일체형계량 (온도+계량)								22,010	23,230			

※계량기등급 : ()안의수치는 호칭 변경 전 등급입니다.

[별표 5] 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 분		소비자요금	
		사용량 요금(MJ당 단가)	
주택용	취사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개별난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중앙난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자가열전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업무난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일반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 타	도매요금 + 공급비용	
냉난방 공조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 타	도매요금 + 공급비용	
산 업 용	동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 + 공급비용	
	기 타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병합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수송용		도매요금 + 공급비용	

-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매사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기본요금은 주택용 중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만 적용합니다.
- 제18조 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단가는 산업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해당 시설의 요금단가가 산업용보다 낮을 경우 해당 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 냉난방공조용 요금의 동절기·기타 월에 대한 공급비용은 업무난방용 공급비용을 적용합니다.

서 식

- [서식 1]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신규)
- [서식 2]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변경)
- [서식 3]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 [서식 4] 계좌자동이체 신청서
- [서식 5] 도시가스 공급 중지 예고
- [서식 6] 도시가스 폐관 신청서
- [서식 7] 도시가스 폐전(계량기) 신청서
- [서식 8]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
- [서식 9]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서식 10]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 [서식 11] 도시가스 공급계약 해지 신청서
- [서식 12] 도시가스 공급확인원
- [서식 13] 도시가스 공급계약 확인서
- [서식 14]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대성에너지(주)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 수집·조항·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조항·이용 목적	▷ 도시가스 사용계약·등록·변경·해지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관련 서비스 이용, 요금의 합산·합구·결제·추심, 요금관련 신청 및 서비스, 고객센터 만족도조사, 프로모션 ▷ 안전점검관리, 계량기고체, 원격통신선 연결, 추가서비스 제공, 이통요금 및 취약수수를 정산, 기타 도시가스의 사용과 공급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의 목적
개인(신용)정보 수집·조항·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예금주명, 계좌자물이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금지급, 금융질서관리정보), 신용등급, 신용거래정보, 기타 금융기관 정보 ▷ 사용량, 사용요금, 결제기록, 공급금지기록 등 가스사용, 공급 및 요금 관련 정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이용기간 : 사용계약 체결일 ~ 해지일 ▷ 보유기간 : 요금정산, 오납 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사용계약 해지 후 5년간 보유, 다만, 사용계약해지 이후에 해지고객의 요금미납으로 인한 분쟁계속 시 분쟁의 종료 또는 해결 시까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유 및 이용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보유 및 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의 내용 :

고객은 상기 개인정보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 및 예금주는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공급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예금주의 금융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할 수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은 www.daesungenergy.com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항·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요금정보 등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신용동의사항)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계	성명	전화번호		
▷ 요금조회 및 수납 ▷ 사용계약 및 안전점검 등				▷ 고객명, 요금정보, 고객전용입금계좌, 사용계약 정보, 안전점검 정보	동의 철회 시까지

※ 고객은 상기 요금정보 등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서의 사용신청 고객 본인에게만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요금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 20 년 월 일 고객명 : (서명/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귀중)

[서식 5]

도시가스 공급 중지 예고

주 소	
성 명	
중 지 사 유	

귀 닥에 가스 공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 기일을 안내하오니 중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개선 기일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에 의거 가스 공급이 중지됨을 안내 드립니다.

개 선 기 일	공 급 중 지 예 정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대성에너지(주)
☎ 1577 - 1190

<별지1>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대성에너지(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거 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동의

- 1. 수집·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 2. 수집·이용 항목
 - 고객정보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시설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 시설정보 : 시설명칭, 사업의 종류, 법인번호, 시설 소재지 등
-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 4.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고객정보 경감대상자정보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시설명)

대표인(시설장)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대성에너지(주)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16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위탁 동의서

대성에너지(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거 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 ["필수"]

1. 수집 · 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2. 수집 · 이용 항목 : 고객정보 : 성명, 고객센터, 주소, 연락처,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경감대상자(다자녀가구는 세대주)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의 수)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4.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이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 ["필수"]

1. 법적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 2
2. 수집 · 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3. 수집 · 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4.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5.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이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1. 법적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 2
2. 수집 · 이용 목적 :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3. 수집 · 이용 항목 : 장애종류, 장애정도, 자살위종류(자살사업참여,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
4. 이용 및 보유 기간 :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5.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위 사항을 숙지하고 민감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이동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 동의거부시 불이익 사항 :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고객정보 경감대상자정보 고유식별정보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가스도매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민감정보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이동의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이동의
- 위 사항을 숙지하고 민감정보 3자 제공 및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이동의

▶ 경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신청인(법정대리인)은 상기와 같이 경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이동의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고지 : 대성에너지(주)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16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 시 가 스 공 급 계 약 서

“세계를 아는 기업, 세계가 아는 기업”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남산동)
전화:053)606-1000/FAX:606-1006



도시가스 공급 계약서

도시가스 사용자인 _____ (이하 “갑” 이라 한다)와 도시가스 공급자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대구광역시장이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갑” 과 “을” 이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원만히 도시가스를 공급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설분담금 등)

- ① “갑” 은 제2조의 도시가스 사용내역으로 산출한 시설분담금 _____ 원 (본 계약서 표지에 기재) ¹⁾을 아래 표와 같이 분담하며, 본 계약 체결 시 현금으로 “을” 에게 납부한다. 다만, “을” 과 별도의 사전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 공급 개시 직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 설 장 소					
계 약 등 급 (m ³ /h)	①	②	③	④	⑤
계 량 기 등 급 (m ³ /h)					
시 설 분 담 금 (부가세 포함)					
공 급 지 점					
공 급 압 령	중압(MPa), 저압(kPa)				
공 급 예 정 일					

- ② “갑” 의 사정으로 계량기 등급 또는 계약등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을” 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의 효력 및 범위)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을” 은 계약 종료시까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 4 조 (가스사용열량의 산정)

- ① “을” 은 “갑” 이 도시가스를 사용한 기간의 가스사용량(검침량(m³))×문압보

1) 시설분담금 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 ① 정계수)에 가중평균열량(MJ/Nm³)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한다.
 사용열량(MJ) = 가스사용량(m³) × 가중평균열량(MJ)
 가중평균열량(MJ/Nm³) :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되는 기간별 총열량(MJ)에서 총부피량(Nm³)을 나눈 열량값
-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 공급 열량 범위 이내로 공급 한다.
 한국가스공사 열량 범위 : 최고열량 --- 44.4MJ/Nm³(10,600kcal/Nm³)
 최저열량 --- 41.0MJ/Nm³(9,800kcal/Nm³)
- ③ 사용압력이 2,451Pa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거나, 온도압력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사용량을 산정한다.

$$V = \frac{V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V : 산정사용량(m³)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1기압 : 101,325 Pa)

- ④ 회사는 가스 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가스계량기의 고장 또는 기온의 변화로 전체 사용량 변동이 많을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월 이전에 적용할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등급 계량기의 용도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회사의 사유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 미검침 사유 및 인정부과 내용 등을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문자, SNS 등) 후 인정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인정부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연속으로 인정부과 하지 않는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한다.

제 5 조 (도시가스 사용요금)

- ①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가스요금, 안전관리, 가스공급조건, 기타 공급제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장이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따른다.
- ② “갑”은 도시가스 사용요금 등을 매월 “을”이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에 납부기한 내 현금으로 납부한다.
- ③ 도시가스 요금을 정해진 납부 기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한 가스요금 원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미납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익월 또는 익익

월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2회까지 부과한다. 다만, 청구서가 발행되기 전에 사용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용계약 해지일까지 계산한다.

제 6 조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증사항)

① “갑”은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계약 의무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을”에게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의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물건(근저당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월 사용예정량이 1,000m³/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삼이한 가스사용자
3. 공급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공급 후 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가)압류, 고객신용상태 변동,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산정한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제6항 가목 기준에 따른 월사용예정량

제 7 조 (사용고객 정보변경 통보 및 정산)

공급계약 후 도시가스 사용기간 내에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갑”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와 함께 당사에 관련서식에 의거 사용고객 정보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사용일까지의 사용요금에 대하여서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 무)

“갑”과 “을”은 도시가스를 공급·사용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공급규정, 기타 관계 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명령, 보고, 점검지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준수 하여야한다.

제 9 조 (안전책임 및 안전관리)

- ① “을”은 법령 및 안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다.
- ② “갑”은 가스 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가스 사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만약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을”은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갑”은 가스 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안전위해방지)

“갑”의 사용 장소에 설치된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을”의 승낙 없이 일체의 연결, 변경 등의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피해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11 조 (사용 장소의 출입)

“갑”은 “을”의 회사직원 및 “을”의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점검, 안전 사용 지도, 연소기, 계량기 점검 등 도시가스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 장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을”의 회사직원 및 “을”의 위탁을 받은 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한다.

제 12 조 (가스계량기 등의 교체)

- ① “갑”은 가스계량기 및 문압보정장치 관리(고장수리, 정기교체 등)를 “을”에게 위임하며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 ② 가스계량기 및 문압보정장치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성능검사 결과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을”은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일 경우.
- 2. 업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나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정부의 행정명령처분, 금지조치 등
- 3. 행정관청의 도로 굴착승인 지연 및 불가, 민원발생
- 4. 한국가스공사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중단
- 5. 국가안보상 부득이할 경우
- 6. “을”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의거 공급중단이 불가 피한 경우

제 14 조 (공급계약의 해지)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갑”이 본 계약을 체결 후 사용자의 명의 변경을 “을”이 기준으로 하는 관련서식에 따라 하지 않거나, 명의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2. “갑”이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을”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8조에 의거 공급 중단하는 경우
- 4. “갑”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진행이 있는 경우
- 5. “갑”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 6. 기타 도시가스공급규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첨 1

확 인 서

상 호(성 명) :

법인등록번호(법정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도시가스공급규정상의 중요 사항[제2장(공급신청 및 계약),
 제3장(공사 및 검사), 제4장(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5장(요금), 제6장(공급),
 제7장(안전) 등 규정]에 대하여(_____)¹⁾ 을
 확인합니다.

위 본인

(인)

20 년 월 일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귀중

1)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 을 위 괄호 안에 직접 기재해 주세요.

[서식 12]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고객명 (상 호)		세대 수 (계약전수)	
신청명			
소재지			
비 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시설 공급전안전점검이
년 월 일 완료되었기에 공급확인원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성에너지㈜ 대표이사 (인)

[서식 13]

도시가스 공급계약 확인서

고객명 (상 호)		세대수 (계약전수)	
신청명			
소재지			
비 고			

상기의 소재지에 도시가스 시설이 년 월 일부로 공급계약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성에너지(주) 대표이사 (인)

[서식 14]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① 업체명			② 사업자번호
③ 소재지	본 사 :		
	사업장 :		
④ 관리자	부 서	성 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e-mail)
⑤ 통지구분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폐쇄	⑥ 설치(변경)일자	
⑦ 설치(변경) 내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 인)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제3항 1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귀중

부 록

[부록 1] 관계법령 요약

- (1) 도시가스사업법
- (2) 계량에 관한 법률
- (3) 건설산업기본법

[부록 2] 유관기관 연락처

[부록 1] 관계 법령 요약

(1)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공급규정)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 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 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계량에 관한 법률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검정)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검정)

-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계량기	유효기간	
	검정	재검정
2.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m ³ /h 이하의 가스미터	5년	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	8년	8년
비고: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1과 같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하.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난방공사(제1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제2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료·금속료의 설치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4와 같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정별	책임기간
15. 전문공사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부록 2] 유관기관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전 화	재난상황실
대구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	803-4923	803-4119
중 구 청	경제과	661-2655	661-2891
동 구 청	민생경제과	662-2614	662-2891
서 구 청	경제과	663-2673	663-2891
남 구 청	시장경제과	664-2653	664-2891
북 구 청	일자리정책과	665-2082	665-2891
수 성 구 청	녹색환경과	666-2674	666-2891
달 서 구 청	기후환경과	667-2672	667-2891
달 성 군 청	일자리경제과	668-2672	668-2891
경 북 도 청	에너지산업과	054-880-2496	054-880-3119
경 산 시 청	일자리경제과	810-5131	810-5637
고 령 군 청	지역경제과	054-950-6585	054-950-6444
한국가스안전공사	본 사	1544-4500 (043-750-1000)	
	대구경북 지역본부	588-0019	588-0019
한국가스공사	본 사	670-0114	
	대구경북 지역본부	850-1900	850-1900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00	